

기술 이전 계약서

awef(이하 '갑')과 aewgewg(이하 '을')은 '갑'이 개발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계약기술'이라 함은 다음의 노하우(know-how)를 말한다.
 가. 노하우 : awegwae
2. '실시'라 함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또는 장치, 설비 등)을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나 원료를 의미한다.

제2조(이전의 범위)

'갑'은 '을'에게 계약기술의 일체를 양도한다.

제3조(기술의 이전 등록)

'갑'은 '을'이 자기('을')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계약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갑'은 기술이전료 수령 후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본 계약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계약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조(기술실시를 위한 상호 협조)

1. '갑'과 '을'은 계약기술의 실시 및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연구개발 등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기술실시에 있어서 기술지도 등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도 등 기술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

1. '갑'은 '을'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을'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본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이나 유효성을 다투는 고소, 고발, 이의 등(이하 '제3자의 기술 유효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갑'과 '을'은 신의칙에 따라 제3자의 기술 유효성에 대한 소송 등의 방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갑'은 본 계약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을'에게 제공하며,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적합성과 경제성 및 시장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비밀보장)

'을'은 계약기술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상대방이 본 계약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을'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기술료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 서도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해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본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내용과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해지일까지 '갑'에게 지급한 기술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을'이 계약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이미 지급한 기술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일부무효의 효과)

-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자신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 본 계약은 '갑'과 '을' 간 기술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의 '갑'과 '을' 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본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17조(분쟁의 해결)

-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서명 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24년 11월 07일

양도인(갑)

성명 : awef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양수인(을)

성명 : aewgewg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